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11.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10	이연희의원	2024.6.14.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 8. 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2		2207221	김동아의원	2025.1.3.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22.)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25.)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실시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증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서비스의 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의2제1항),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